



일본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보트 침몰 책임이 제조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여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한 것은 보트 제조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 항 소 인 : 도노구라후토(トノクラフト) 주식회사, 동사 대표이사 外岡和雄 외 1명
- 피항소인 : 甲野太郎, 丙川竹夫 외 1명
- 대상사건 : 도쿄고법 2009(ㄴ) 321호
- 사 건 명 : 손해배상청구 항소사건
- 연월일등 : 2010.6.17 민사15부 판결, 변경 (확정)
- 참조조문 : 민법 709조, 710조
- 1심 재판 : 시즈오카(静岡)지법 2008(ㄱ) 544호, 2008. 12. 1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항소인 甲野太郎 및 乙山松夫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항소인 甲野太郎은 항소인 도노구라후토(トノクラフト) 주식회사에 대해 110만 엔 및 그 중 100만 엔에 대한 2008년 5월 20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항소인 外岡和雄에 대해 55만 엔 및 그 중 50만 엔에 대한 2008년 5월 20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피항소인 乙山松夫는 항소인 도노구라후토 주식 회사에 대해 33만 엔 및 그 중 30만 엔에 대한 2008년 5월 20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

한 금전을, 항소인 外岡和雄에 대해 16만 엔 및 그 중 15만 엔에 대한 2008년 5월 20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항소인들의 피항소인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해 이를 20등분하여 그 2를 피항소인 甲野太郎의, 그 1을 피항소인 乙山松夫의, 그 나머지를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항소인들의 승소부분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당사자가 청구하는 재판

1. 항소의 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항소인 甲野太郎은, 항소인 도노구라후토 주식회사에 대해 2,170만 엔, 항소인 外岡和雄에 대해 330만 엔 및 이들에 대한 2008년 5월 20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3) 피항소인 乙山松夫는, 항소인 도노구라후토 주식회사에 대해 220만 엔, 항소인 外岡和雄에 대해 110만 엔 및 이들에 대한 2008년 5월 20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4) 피항소인 丙川竹夫는, 항소인 도노구라후토 주식회사에 대해 220만 엔, 항소인 外岡和雄에 대해 110만 엔 및 이들에 대한 2008년 5월 20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5) 소송비용은 제1, 제2심 모두 피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항소 취지에 대한 피항소인들의 각 답변

본 건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 사실의 개요

1. 사안의 요지

본 건은 항소인 도노구라후토(トノクラフト·이하 「항소인 회사」로 한다.) 주식회사가 제조, 판매한 레저용 낚시보트의 침몰사고에 관해, 구입자인 피항소인 甲野가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 소유 보트의 침몰사고 원인은 동 보트의 결함에 있으며 항소인 회사의 대표자인 항소인 外岡

이 계속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게시하고, 피항소인 甲野가 이러한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등에 의해 항소인들의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항소인들이 피항소인들에 대해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2. 전제가 되는 사실, 쟁점 및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3. 당사자의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주장 생략)

제3 당 법원의 판단

1. 전제가 되는 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1) 항소인 外岡은, ‘무사시노’(武藏野) 미술대학 공예공업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1978년 해양 용품과 스포츠 용품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항소인 주식회사 ‘도노구라후토’를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항소인 회사는 外岡의 제조기술력에 의해 순조롭게 운영되어 사업규모도 확장했다. 그러나 ‘윈드서핑’ 인기가 수그러들자 수제(手製) 보트 제조를 시작, 1996년에는 브랜드명 「런팬(ランファン)」이란 이름으로 레저용 ‘낚시보트’의 제조 판매에 들어갔다. 이 항소인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外岡의 개인회사로 운영되었다.

항소인 회사가 제조한 보트 「런팬21」은 보트 전문 잡지 「KAZI」, 「BOATPLUS」 등에 일본을 뛰어넘는 ‘디자인’, 기능도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한 소형 보트라는 높은 평가와 함께 소개되었다. 또한 잡지 「OCEAN LIFE」에는 대형 보트 제조회사의 보트 12개와 함께 항소인 회사가 제조한 「런팬22」(이하 「런팬」이란 이름이 붙여진 일련의 보트를 「런팬·시리즈」로 한다.)가 소개되었다.

이 밖에 잡지 「BoatCLUB」, 「KAZI」도 항소인 회사는 소규모 메이커이면서도 기능성과 조형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항소인 外岡이 보트의 전

제조공정에 관여하여 완성도 높은 보트를 제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 항소인 회사에서는 2002년 6월 「런팬 · 시리즈」로 「프로피셔-185」(길이 5.5m, 폭 1.97m, 중량 450kg, 연료탱크 용량 68리터, 최대마력 115마력, 가격 147만 엔. 이하 「프로피셔」로 한다.)라는 ‘낚시보트’를 제조, 판매하게 되었다.

잡지 「BoatCLUB」에는 사용상의 편의가 우선시되고 안정감이 우수한 신개발 소형 보트라고 소개되었으며, 잡지 「OceanStyle」에서는, 戊田梅夫라는 낚시 애호가들의 투고를 통해 ‘프로피셔’는 원양주행도 가능하고 ‘레저’로 낚시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장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보트라고 소개했다.

(3) (가) 피항소인 甲野는, ‘프로피셔’의 일반판매에 앞서 2002년 2월 ‘보트쇼’에서 戊田을 만나 ‘프로피셔’를 구입, 공동소유하기로 합의했으며, 戊田은 항소인 外岡과 흥정하여 통상가격 147만 엔인 보트를 140만 1,750엔으로 할인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戊田은 항소인 外岡에게 「불침(不沈)구조」(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관련 증거나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전복되더라도 배 자체는 침몰하지 않는 설계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 「불침구조」는 이 정도의 의미로 사용한다.)로 해달라고 요망했으나 항소인의 설명으로 구조상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햇트스치후나’부(ハットスチフナ部: 선체 보강을 위해 종적재(縱適材)로 격벽(隔壁)이 만들어진 갑판 아래의 공간부분)에 부체(浮體·우레탄 발포 스티로폼)를 충전(充填)하여 부력(浮力)을 갖게 하는 것으로 양해가 이루어졌으며, 戊田은 피항소인 甲野에게 침몰하지 않는 구조로 개조하기 위한 ‘폼’(フォーム) 충전 등 특별의장(艤裝) 등의 비용으로 25만 엔 정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피항소인 甲野는 2002년 5월 ‘요코스가’(横須賀) 시내의 ‘마리나’(marina·계류시설)에서 「해공(海空)」으로 명명된 본 건 보트의 진수식을 가졌다. 이때

까지 항소인들은 피항소인 甲野에게 ‘프로피셔’의 취급설명서나 보증서 같은 문서를 교부하거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매매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있었다.

피항소인 甲野는 2002년 7월 즉시 ‘미야케섬’(三宅島)까지 원정하는 등 본 건 보트의 성능에 만족했다. 그리고 이 원정의 경험을 토대로 戊田과 의논 끝에 2003년 6월경 보기(補機) ‘엔진’(9.9마력, 48kg)을 장착했다. 설치장소는 주(主) ‘엔진’(170kg)이 설치된 본 건 보트의 선미(船尾) 중앙부 오른쪽의 튀어나온 갑판부분 아래 외벽(우현(右舷)쪽의 뒷부분에 위치)이며, 그 방법은 상기 갑판부분 아래 외벽에, 항해 중 보기 ‘엔진’에 의해 발생하는 가속의 하중(荷重)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진 ‘브래킷’(bracket·선반받침)을 설치하여 장착한 것이다.

피항소인 甲野는, 다시 약 1년 후인 2004년 6월 23일 본 건 보기 ‘엔진’을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상기 갑판 상부에 고착시켰다. 이 처치는 종전의 장착상태로는 해상 항해 중 선체가 ‘점프’할 때 본 건 보기 ‘엔진’이 동요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방법은 2개의 ‘스테인리스 파이프’의 한쪽 끝을 동 보기에 고정시키고, 또 다른 한쪽 끝을 상기 갑판부분의 위에 ‘볼트’로 고정시켜 동 보기가 선체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이하 이 처치를 「固定」으로 한다). 더욱이 본 건 보기 ‘엔진’의 장착은 아무런 상담 없이 항소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나) 그사이 피항소인 甲野는, 잡지 「BoatCLUB」의 취재에 응했으며, 甲田春夫가 기술한 기사에서는, 본 건 보트를 조종해 본 결과 소형이면서도 쾌적한 항해를 할 수 있었고, 기능이 탁월하여 최첨단의 낚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프로피셔’에는 설계자의 자신감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을 납득할 수 있었다고 기재되었다.

(다) 戊田은 잡지 「OCEAN LIFE」 2004년 8월호

에 「목표, 소형 보트로 일본일주」라는 제목의 연재 기사 게재를 선언하면서, 연재 첫 머리에서 「‘프로 피셔’는 비용이 적게 드는 소형 보트임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높고, 원거리도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고, 어선과 비슷한 낚시기능을 가졌으며, 대형 전자기기의 탑재까지도 가능한 이상적인 보트」라고 소개했다.

戊田은 본 건 보기 ‘엔진’ 장착 후 얼마 되지 않은 2004년 7월 하순 본 건 보트를 타고 ‘요코스가’ 시를 출발, 약 50일 후 일본열도를 반주(半周)하는 형식으로 ‘니이가타’ (新潟)에서 그 항행(航行·이하 이 항행을 「일본반주항행」으로 한다.)을 끝냈으며, 항행 중 본 건 보트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항소인 外岡은, 상기 항행의 출발준비 때와 항행 후 ‘니이가타’로부터 ‘요코스가’ 시 소재 ‘마리나’까지 육송(陸送)되는 본 건 보트를 보고 있었으나, 본 건 보기 ‘엔진’이 과중(過重)하여 선체에 과부하(過負荷)가 걸린다는 지적을 하거나, 상기 항행이 본 건 보트의 사용방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말을 한 일이 없었으며, 항행 종료 후 본 건 보트를 점검하고 선체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라) 피항소인 甲野는, 본 건 보트의 선체에 대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2005년 3월 해약하여 무보험상태가 되었다. 또한 피항소인 甲野나 戊田이, 본 건 보트를 스스로 수리, 점검하거나 혹은 제3자에 위탁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리, 점검 등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일본반주항행 종료 후에도 항소인 外岡의 자발적 점검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수리 점검을 했는지 아무 증거도 없다.

더욱이 피항소인 甲野는, 본 건 침몰사고 발생 전부터 ‘빌지’ (bilge·배 밑바닥에 고인 불필요한 물)가 배 밑바닥에 쉽게 고인다는 느낌을 가졌으나 이러한 느낌을 항소인들에게 말하거나 그 대처방안

등을 의논한 사실이 없었으며, ‘빌지’가 고이는 원인을 찾기 위해 본 건 보트의 선체 수리 점검도 하지 않았다.

(4) 일본반주항행 후 약 1년이 경과한 2005년 9월 24일 피항소인 甲野는, 다음 날 본 건 보트를 사용할 예정으로 marina에서 본 건 보트의 하가(下架)를 마치고 marina 관리자에게 본 건 보트의 계류(繫留)를 부탁하고 귀가했는데, 그날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비가 내렸다.

다음 날 오전 5시 30분 피항소인 甲野가 marina에 도착해보니 본 건 보트는 좌현(左舷)을 위로 하고 전복되어 있었으며, 잔교(棧橋·선창)의 ‘로프’에 간신히 걸려 침몰은 하지 않고 있었다. 피항소인 甲野는 즉각 marina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오전 7시경 본 건 보트를 인양하고, 우현(右舷) 선미(船尾) 근처의 배수구의 이음새에서 물이 유입돼 본 건 보트가 침몰되었다고 판단, 항소인 회사에 연락을 취했다.

9월 26일 marina에서 항소인 外岡, 피항소인 甲野 및 marina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항소인 外岡은 보트가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침몰했다고 했으나, 본 건 보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현 선미 부근의 배수구 아랫부분 안쪽 벽에 선현(船舷)과 평행으로 5~6cm의 ‘균열’ (본 건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 이 ‘균열’에서 물이 배 밑바닥으로 들어와 침몰했다고 밝혔다.

항소인 外岡은, 피항소인 甲野가 본 건 ‘균열’이 생긴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항소인 甲野에 의해 방치된 ‘균열’에 의해 보트가 침몰한 것이므로 책임은 선장인 피항소인 甲野에게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피항소인 甲野는, 본 건 ‘균열’이 생긴 것은 본 건 보트의 구조상의 결함이 아니냐고 반론했다. 피항소인 甲野는 본 건 ‘균열’의 존재를 모른 채, 본 건 보트를 계속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어쩔 것이냐고 추궁했으나, 항소인 外岡은 선장의 책임이라고 대답하면서 제조자 측의 책임이 아니므

로 손해를 보상할 수도 없으며, marina 경영자에게도 계류(繫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5) 항소인 外岡, 피항소인 甲野 및 marina 관계자는 우현 선미부근의 배수구 아랫부분의 선내 벽에 생긴 본 건 ‘균열’에서 물이 유입되어 배 밑바닥에 고였기 때문에 본 건 침몰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본 건 ‘균열’의 발생원인, 본 건 ‘균열’에서 물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본 건 보트가 침몰하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되지 않고 있었지만 ‘균열’ 발생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항소인 甲野는, 본 건 홈페이지에 올려진 「일기」를 통해, 9월 25일에는 「해공격침(海空擊沈)」이라는 제목으로 본 건 보트가 원인불명으로 침몰했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기재했으며, 9월 26일에는 「성의 없는데 아연(嗟然)」이라는 제목으로 항소인들이 ‘균열’을 발견하지 못한 선장, 즉 피항소인에게 책임이 있고, marina도 관리책임이 있으며, 항소인들은 일체 책임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바람에 돌아왔고, 선체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으나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어 9월 28일(을6)에는, marina에서 소형 선박 감정인에게 본 건 보트를 보여주고 대응책을 의논한 후 ① 재판에서 다투면 승소할 수 있으나,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 소송경비 등을 빼면 자기 부담도 있다는 점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 ② 재판에 드는 비용으로 보트를 수리하는 편이 건설적이기는 하나 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③ marina의 손해보험을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보험회사를 납득시키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④ 본 건 보트의 제조자인 항소인들이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하찮은 태도가 대단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비정한 현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더욱이 상기 28일의 일기내용은 후에 제출된 <을

제45호증>과는 크게 다르나, <을제45호증>은 후에 피항소인 甲野에 의해 개서(改書)된 것이며, 독자가 읽은 것은 상기한 것(을6)이다(이 점은 피항소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상기 「일기」의 각 내용이 기재된 후, 이를 열독한 사람들이 본 건 게시판에 사고를 알고 크게 놀랐다는 감상과 함께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격려의 발언들을 계속 올리기 시작했다.

9월 28일 그 중의 한 사람이, 결국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냐고 질문하면서 「... 확실히 비와코(琵琶湖·일본 최대의 호수) 근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모른다,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별지발언목록 <원판 결 첨부 「발언목록」과 동일>의 「No」란 기재4의 「발언내용」란 기재 중 하선부분. 이하 동 목록의 「발언내용」란 기재의 하선부분 중, 피항소인들의 기재에 대해서는 「No○기타발언」으로 표기한다. 이들 발언 이외의 부분은 「기재」로 표기한다.) 이라는 발언을 기재했다.

이에 대해 피항소인 甲野는, 「「균열」이 왜 생겼는지는 불명이다. 부딪치거나 좌초한 사실은 일체 없다. 검증이 필요하다. 보기에는 시공(施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제조자’(builder·항소인 外岡을 지칭)는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모른다, 없다는 것이 기본인 것 같다. (No.5 甲野 발언)」고 기재하여 올렸다. 또한 「(제조물 책임<PL>은 보증기간 문제로 추궁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일반론을 설명한 다음) 보통 사용하고 있더라도 균열이 생겨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고장은 PL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 또한 배의 성격으로 보아 선체의 어떤 부분에 응력(應力)이 강하게 걸려 균열이 생긴 것이라면, 그 것은 결함이며, PL법의 대상이다. 하물며 그러한 사실을 수요자에게 알리지 않고 주의, 경고도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의 ‘리콜’에 필적(匹敵)하는 것이다. (No. 6 기타발언)」라는 기재에 대해서는, 물손(物損)사고이므로 법의 적용 밖이고, ‘리콜’의 실

중이 곤란하므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100만 엔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기재하는 동시에 「(전문가에 의하면) 보기에는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No.7 甲野 발언)」고 기재하여 올렸다.

다음 날 29일 피항소인 甲野는, ‘타협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내용에 대해 「타협이고 뭐고 저쪽이 태도를 바꾸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는 없다.», 「동일한 보트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네요. (No.8 甲野 발언)」라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항소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피항소인 甲野는 소송의 제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소하여 승소하더라도 비용부담이 더 크니 역시 사회적 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하겠네요. (No.37 기타발언)」, 「그렇다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이용하여 … 압력을 넣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불매(不買)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소규모 제조사이므로 폐업할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상대방도 저항할 것으로 생각하나, 바로 그것이 ‘기회’ 라고 생각한다. (No.38 기타발언)」는 등의 발언이 기재되었다.

피항소인 甲野는, 상기와 같이 소송제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있다는 등의 전제를 부정하지도 않고, 30일 「말로는 보트에 ‘균열’이 생겼다고 듣고 있었지만, ‘균열’ 등을 현실적으로 본 일도 없고 이것이 ‘균열’이라고 지적되기까지 모르고 있었다. 섬을 돌 때나 원정 때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 (No.3 甲野 발언)」는 등의 발언을 기재했으나, 같은 날 본 건 게시판에 「공평성이 없어서」라는 제목의 발언을 기재하여, 일기나 본 건 게시판은 피항소인 甲野만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고, 제조자 측의 견해가 없기 때문에 공평성을 생각하여 본 건 침몰사고 논란은 종료시키고 싶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

다.

(6) 피항소인 乙山은, 본 건 침몰사고의 화제를 끌고 싶다는 피항소인 甲野의 의견 표명을 듣고, 10월 4일 「공평성이란 뭐야? … 도대체 제조자의 사장에게 사회성이 없으니까 모두들 놀래서 화제가 된 거지 … 배가 침몰하는 건 유명 제조사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상품을 판매한 후에 어찌되든 손님의 책임이므로 모른다고 하면 위축되지요. (No.1 乙山 발언)」라는 발언을 기재했다. 그러자 이에 동조하는 기재가 이어져 「제조사 사장의 인간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No.2 기타발언)」라는 등의 발언도 올라왔다.

한편 항소인 外岡은 10월 3일 marina를 방문, marina 관계자에게 본 건 ‘균열’은 본 건 보기(補機) ‘엔진’을 장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10월 4일에는 피항소인 甲野의 부친에게 ‘팩스’ (을5)를 송신한 뒤, 이를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피항소인 甲野는 피항소인 乙山の 발언 및 항소인 外岡이 ‘팩스’를 송신한 것과 관련, 10월 5일 본 건 게시판에 동 항소인이 말하는 선장의 책임이란 무엇이나고 질문하는 내용을 올려 본 건 게시판에서의 의견 게재를 재개했다.

피항소인 甲野의 이 같은 질문을 계기로, 피항소인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선장의 책임이라든가 甲野 씨의 선장으로서의 능력을 공격한다든가 하는 어린애 같은 대응이 계속된다면, BON 씨(본 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들 중의 한 사람)가 말하는 것처럼 항소인 회사에게도 예상할 수 없는 영업적인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홈페이지상에서 불침(不沈)구조를 부침(浮沈)구조로 바꾼다든지,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과거의 ‘유키지루시’(雪印·식품회사 이름)를 연상케 하는 대응도 의문입니다.», 「내가 걱정되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外岡이라는 개인이 분투한 끝에 모처럼 개성있는 보트를 내놓은 것인데, 침몰했다면 공장으로

끌고 가서 원인을 규명하는 자세가 최소한 필요한 것입니다 ... 이대로 간다면 회사의 신용은 몇 센티미터의 균열로 인해서 붕괴할 것입니다. (No.12 乙山 발언), 「선장은 평소에 점검이나 보수 유지에 유의해야 하며, 침몰에 대해 선장에게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특별한 부력체(浮力體)를 주입한 것도 아닐 텐데 ‘불침구조’ 등 고객들이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선전문구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이는 ‘요소(要素)의 착오’로서 이 매매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네요. (No.11 기타발언), 「정말 내일은 내 처지가 그럴 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도대체 어떤 기분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No.54 기타발언), 「원인도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사에는 일체 책임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 (No.55 甲野 발언), 「자신의 과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상대방의 문제점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책임 전가만 한다. ... 그러한 제조자의 보트는 무서워서 구입할 수가 없다. 그러한 이미지가 퍼져나가 시장에서 도태되어도 할 수 없지 (No.56 기타발언)».

(7) 피항소인 甲野는 10월 10일 항소인 外岡과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가진 후 본 건 게시판에 「제조자는 보기(補機)가 장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보기를 장착해서는 안 된다고 제조자가 반드시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No.58 甲野 발언)」라고 기재했다.

(8) 항소인 外岡은, 10월 8일 피항소인 甲野의 근무처로 전화를 걸어 그의 상사인 丁原 부장에게 피항소인 甲野가 홈페이지를 통해 항소인들을 비방 증상하는 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했다.

(9) 10월 11일 이후 본 건 게시판에는 본 건 침몰 사고에 관한 기재가 없었으나 동월 21일 피항소인 丙川은, 「일방적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본 건 게시판에서의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실

을 보면 일방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甲野 씨의 회사에 협박조의 ‘팩스’를 보냈다」는 등의 몇 가지를 기재한 후 「이 사건은 이 업계의 많은 분들이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 나는 인간이 가져야 할 성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금전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뭔가 보였어야 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No.43 丙川 발언)」라는 글을 올렸다. (이하 게시판에 기재된 No.44 乙山 발언, No.45 기타발언, No.46 기타발언, No.47 기타발언, No.48 기타발언, No.21 기타발언, No.41 기타발언, No.42 기타발언, No.40 기타발언, No.18 乙山 발언, No.20 기타발언, No.39 기타발언, No.52 기타발언, No.17 기타발언은 생략).

(10) 피항소인 丙川은, 12월 2일 「드디어 저 바보가 甲野의 회사 총무에게까지 쳐들어간 모양이야 ... 원래 상식이라는 글자를 모르는 인간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다니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 甲野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방식에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자신의 책임은 모른 채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집요하게 하는 제조자이다. (No.13 丙川 발언)」라는 발언을 기재하여 올렸다. (이하 게시판에 기재된 No.28 기타발언, No.29 기타발언, No.32 丙川 발언, No.33 기타발언, No.34 기타발언, No.35 기타발언, No.36 기타발언, No.26 기타발언, No. 16 甲野 발언, No.31 甲野 발언, No.23 甲野 발언, No.25 甲野 발언은 생략).

(11) 항소인 外岡이 본 건 게시판에 발언을 올렸다고 생각되는 인물의 자택이나 근무처를 찾아가자, 피항소인 甲野는 일기를 올린 때부터 약 2개월 반이 지난 12월 12일 본 건 홈페이지상의 본 건 게시판과 본 건 보트 침몰사고에 관한 부분을 폐쇄했다.

2. 피항소인들의 본 건 기재 등의 행위가 항소인들에 대한 명예 혹은 신용 등 법익을 훼손 또는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1) 명예훼손이란 그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평가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객관적 평가의 저하를 가져오는 행위로 해석되며(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1970년 12월 18일 판결),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는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한다(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1956년 7월 20일 판결).

그리고 당해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즉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상은 당해 행위의 위법성이 추정된다. 다만 당해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피침해자에게 이를 수인(受忍)해야 할 사정이 인정될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기 위법성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다.

(2) 피항소인 甲野에 대하여 (본 건 甲野 발언을 기재한 사실 및 본 건 乙山 발언 등을 방치한 사실 등에 관하여)

(가) ㉔ 전기 인정에 의하면, 본 건 甲野 발언은 그 열람자들에 대하여 ① 본 건 침몰사고의 원인인 ‘균열’의 발생원인은 항소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No.5, No.7, No.8) ② 본 건 ‘균열’의 존재는 생명의 위기를 초래한다. ③ 항소인들은 보트의 하자로 생명에 대한 위기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원인의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구입자인 피항소인 甲野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한다(No.16, No.23, No.25, No.31, No.55)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항소인 甲野의 발언 외에 본 건 게시판에 올려진 발언은 ④ ‘균열’은 항소인들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어야 할 하자로, 법적 책임과 동등한 정도의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만 할 제조상의 하자이다. (No.6, No.18, No.37, No.38, No.50) ⑤ 항소인들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항소인 회사의 사장인 항소인 外岡에게 사회성이나 상식이 없기

때문이다. (No.1, No.2, No.12, No.56) ⑥ 항소인 外岡은 소비자들로부터 제조하자책임을 추궁 받으면, 당해 소비자의 자택이나 근무처로 팩스문서를 보내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악질적인 업자(No.13, No.41, No.48)라는 인상을 주고 있음이 인정된다.

㉔ 생명을 맡기는 구조물인 보트의 제조판매자는 디자인, 기능,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판매 후 결함 등에 대한 대처 관련 평가가 중요함은 당해 업종의 성격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 건 보트에 제조상의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인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구입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구매 후 관리’를 해주지 않는 제조판매업자라는 인상을 주는 상기 ① 내지 ⑥의 각 발언은, 피항소인 甲野가 운영 관리하는 본 건 게시판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인들의 사회적 평가나 영업상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㉕ 이에 대해 피항소인 甲野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독자들이 상기와 같은 인상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와 같이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는, 일반독자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대립하는 의견을 병기(併記)하는 등의 사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㉕ 피항소인 甲野는, 본 건 홈페이지의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적고, 그 존재를 아는 피항소인 甲野의 친지들이 반복해서 열람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본 건 기재 중에는 피항소인 甲野를 알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의견을 올린 사람도 있고, ‘업계’ 사람들도 열람하고 있다는 문언(文言)도 있으므로, 한정된 사람들만이 열람한 ‘홈페이지’라고 인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건 ‘홈페이지’를 한정된 사람들만이 열람했기 때문에 본 건 게시판의 발언에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사회적 평가가 영향 받은 것은 아니라는 피항소인 甲野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항소인 甲野는, 본 건 게시관상의 발언에 대해, A 본 건 침몰사고로 골치를 앓은 피항소인 甲野가 친지들에게 널리 의견을 구한 취지, B 피항소인과 친지들이 항소인들의 대응에 대해, 보트의 제조판매자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로 삼은 취지, C 항소인 外岡의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집요한 언동을 지적한 취지 등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전기의 명예 및 신용훼손 발언이, 수인(受忍)한도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㉔ 전기 ① ~ ⑤에 대하여 피항소인 甲野는 A 및 B와 같이 진술하므로 본 건 게시관에 각 발언이 기재된 배경사정을 검토한다.

피항소인 甲野가 본 건 게시관에 본 건 甲野 발언을 올리고, 본 건 乙山 발언 등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초래된 신용훼손 등의 법익침해를, 본 건 침몰사고의 원인에 대해 해명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는 항소인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상기와 같이 동 피항소인이 본 건 보트의 소유자로서 본 건 보기 엔진을 장착하고, 관리점검을 태만히 하여 본 건 ‘균열’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측되는 본 건에 있어서는, 더욱이 항소인들이 상기와 같은 의무를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

또한 피항소인 甲野의 A 혹은 B의 주장은, 적어도 피항소인 甲野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전기 ① ~ ⑤에 관해서는 전기와 같이 위법성이 추정되는 행위가 됨으로,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혹은 피침해자가 이를 수인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기와 같이 본 건 침몰사고는 본 건 ‘균열’에서 물이 유입되어 일어난 것이고, 이 ‘균열’은 본 건 보기 ‘엔진’의 장착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피항소인 甲野는 침몰사고 2일 후인 9월 26일에는 항소인 外岡으로부터 본 건 ‘균열’에서의 침수가 상

기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받았고, 10월 10일에는 본 건 보기 ‘엔진’의 장착으로 본 건 ‘균열’이 발생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러한 경위로 보아, 피항소인 甲野의 A 혹은 B의 주장, 즉 인터넷상에 게시관을 개설하여 본 건 침몰사고에 대해 독자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거나 제조판매업자로서의 대응자세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면, 인터넷의 위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항소인 甲野가 취한 방법은, 본 건 침몰사고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사정을 모르는 많은 독자에게 오해나 잘못된 선입관을 주어 본 건 기재행위에 참여토록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전개되는 언론사회의 자유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 요인인 공정, 공평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도 피항소인 甲野의 전기행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피항소인 甲野의 상기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㉕ 전기 ⑥에 대하여 피항소인 甲野는 C와 같이 주장한다.

전기 인정에 의하면, 전기 ⑥의 각 발언은 항소인 外岡이 인터넷 사용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본 건 게시관의 기재를 중단시키기 위해 피항소인 甲野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그의 친척이나 근무처에도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송신하여 본 건 게시관의 기재나 관리방법이 인터넷상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동 피항소인을 범죄자라고 부른 사실이다.

피항소인 甲野가 본 건 게시관에 기재하기도 하고, 기재된 발언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보트의 하자에 관해 항소인들이 무책임한 언동을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준 것은 항소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상의 기재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항소인 外岡이 피항소인 甲野의 근무처 등에 그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송신한 행위는, 역으로 동 피항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전기 ⑥의 각 발언을 본

건 게시판에서 삭제하지 않은 등 피항소인의 행위를 곧바로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라) 이상과 같으므로, 피항소인 甲野의 행위는, 전기 ①~⑤에 관해서는 항소인 外岡의 사회적 평가와 항소인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전기 ⑥에 관해서는 이를 위법이라고까지 평가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피항소인 乙山에 대하여

피항소인 乙山은 항소인들과 피항소인 甲野와의 일련의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질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도 「본 건 침몰사고의 문제는 보트 제조자와 보트 사용자를 위해 풍화(風化)시켜서는 안 된다」는 등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문언으로 본 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진정되어가던 본 건 기재와 관련된 논란을 다시 활발하게 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피항소인 乙山은 피항소인 甲野와는 달리 본 건 보트나 ‘프로피서’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그의 발언이 항소인들의 명예나 신용을 직접 훼손하거나 침해한다고 하기 어려운 면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전기와 같이 본 건 乙山 발언은, 본 건 침몰사고에 대해 그 원인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자세도 없이, 인터넷에 의한 인신공격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이용하여 생각나는 대로 독자들에게 항소인들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공격적이고 과격한 비판적 문언을 올려 본 건 기재 논란이 계속되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그 결과 본 건 기재가 전체적으로 항소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침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항소인 乙山은 상기 발언으로 항소인들의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피항소인 丙川에 대하여

(가) 항소인들은, 「No.35 기타발언」은 피항소인 丙川이 써서 올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항소인 丙川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피항소인 丙川이 올렸

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No.35 기타발언」을 제외한 본 건 丙川 발언은, 본 건 침몰사고에서는 성의가 문제인 바, 항소인들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으며, 항소인 外岡은 상식이 없고, 무책임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제조업자로서 배를 만들 자격이 없다고 야유를 섞어가면서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본 건 丙川 발언은, 읽는 사람들에게 항소인들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저하시킬 만한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건 기재를 계속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곤란하므로, 丙川 발언은 항소인들의 명예훼손 행위 관점에서 보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위법성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겠다.

3. 손해

(1) 피항소인 甲野가 본 건 침몰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본 건 게시판에 전기 2. (2) ①~⑤의 각 발언을 기재하여 올리고 방치한 사실, 동 乙山이 본 건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은, 보트와 같이 승조원의 생명을 좌우하는 구조물의 제조업자로서, 아직 10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일정한 평가를 획득한 항소인들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을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항소인 甲野 및 동 乙山은 이로 인해 항소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져야한다.

(2) 항소인 外岡의 손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훼손에 의한 위자료 등의 손해액은, 훼손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그 영향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불이익 혹은 손해, 피해자 자신이 갖는 명예회복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항소인 外岡이 보트 제조의 기술자로서 일본 내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고, 또한 항소인 회사와 사실상 일체가 되어 「런팬 · 시리즈」로 본 건 보트의 ‘프로피

서-185'를 상징적인 상품으로 제조 판매하여 업적을 올렸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이러한 실적 위에 형성된 향소인 外岡의 사회적 평가는 상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동 향소인의 정신적 고통은 심대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향소인 外岡이 본 건 보트의 침몰 직후에 보다 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보트의 구조역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항소인 甲野의 이해를 얻기 위해 설명을 충실히 했다면 다른 상황 전개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또 본 건 기재 논란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동 향소인의 보트 제조업이 사실상 폐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추정되나, 이 점에 대해서도 동 향소인이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말고, 잡지 등에 본 건 침몰사고의 전말, 본 건 '균열'의 발생원인 등에 대해 침착하고도 냉정하게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했더라면, 앞에서와 같이 그 견해에는 합리성이 인정되었을 것이므로 동 향소인의 명성, 실적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전히 보트 제조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또한 후술과 같이 경제 불황의 문제 등까지도 고려하여 생각한다면, 보트의 발주가 없어 보트 제조를 중단하는 상태에 이른 것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여 과대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3) 향소인 회사의 손해

향소인들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1년에 3척 이상을 판매하여 연간 390만 엔의 이익을 올렸으나, 2006년 이후에는 1척도 판매하지 못했다고 주장, 그 3년분의 일실(逸失)이익 및 '프로피셔'의 개발비용을 그들이 입은 현실적인 불이익 혹은 손해로 제시했

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판매한 보트 대수나 향소인 회사의 이익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기 주장에 따른 손해액 산정도 어렵다.

(4) 이상의 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항소인 甲野가 본 건 게시판에 본 건 甲野 발언을 올리고, 본 건 乙山 발언, 본 건 丙川 발언 및 본 건 기타발언 등을 방치함으로써 향소인 外岡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만 엔, 그 변호사 비용 5만 엔, 향소인 회사가 입은 신용훼손에 의한 무형의 경제적 손해로 100만 엔(민사소송법 248조에 근거), 그 변호사 비용으로 10만 엔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일실(逸失)이익이나 '프로피셔'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손해로 인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또한 피항소인 乙山이 본 건 乙山 발언을 본 건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향소인 外岡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5만 엔, 그 변호사비용은 1만 엔, 향소인 회사가 입은 신용훼손에 의한 무형의 경제적 손해는 30만 엔으로 합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 그러므로 향소인들의 피항소인 甲野 및 동 乙山에 대한 본 소 청구는 상기의 한도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나, 다른 나머지는 이유가 없어 기각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원판결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며, 다른 나머지 본 건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판례시보』 No. 2065호, 50-67.

■ 번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인터넷 회사가 도로주변 전경을 촬영하여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에
원고의 집과 차고, 수영장 등이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방문자나
배달원 등 원고의 차도에 진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므로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 보링(Boring) v. 구글(Google Inc.)
- 미 항소법원 제3순회부 No. 09-2350
- 결정일 : 2010. 1. 28.

아론 보링(Aaron C. Boring)과 크리스틴 보링(Christine Boring) 부부는 원고이면서 항소인이고, 구글(Google Inc.)은 피고이면서 피항소인이다.

[1] 사생활 - 보통법상 권리 - 침입 (§ 13.0102)
사생활 - 보통법상 권리 - 사적 사실의 공개 (§ 13.0103)

원고들은 인터넷 회사가 자신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사적인 사실을 공적으로 공표했다는 주장을 성공적으로 펼치지 못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인터넷 회사(구글)는 미국 내 주요 도시 도로 주변의 전경들을 무료로 제공해 운전 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회사의 대리인들로 하여금 파노라마 디지털 카메라를 승용차에 부착시켜 도시를 운행하면서 도로주변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생성해낸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은 원고의 집과 차고 그리고 수영장의 외적 경관에 불과한데, 이는 방문자나 배달원을 포함하여 원고의 차도에 진입하는 자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피고가 차도

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찍은 사진 이미지의 경우도 그 자체로 매우 거슬린다(highly offensive)고 할 만한 수준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은 집안에 있는 자신들을 그들이 외부에서 들여다보았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또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것이 매우 거슬리는 수준의 것인지와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의 행위에 의해 침해를 당한 것인지에 관해 내린 법원의 판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전거를 들어서 반박하지 못하였다.

[2] 사생활 - 보통법상 권리 - 일반 (§ 13.0101)

펜실베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의 무단침입주장을 기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인터넷 회사는 미국 내 주요도시 도로 주변의 전경들을 무료로 제공해 운전 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회사의 대리인들로 하여금 파노라마 디지털 카메라를 승용차에 부착시켜 도시를 운행하면서 도로주변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생성해낸 것이다. 이 점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그들의 소유지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3] 명예훼손 - 관련 소송 사유 - 일반 (§ 11.5801)
계약 의무 - 일반 (§ 23.01)

원고들은 인터넷 회사가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을 성공적으로 펼치지 못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인터넷 회사는 미국 내 주요도시 도로 주변의 전경들을 무료로 제공해 운전 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회사의 대리인들로 하여금 파노라마 디지털 카메라를 승용차에 부착시켜 도시를 운행하면서 도로주변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생성해낸 것이다. 그러나 무효이거나 미수의 계약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이익을 부여했다거나 혹은 원고가 적절히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이익이 있다는 주장도 없었다. 또 원고 대신 피고가 얻었다는 그 이익을 원고가 피고에게 준 바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없었다.

[4] 사생활 - 보통법상의 권리 - 일반 (§ 13.0101)

원고들은 인터넷 회사에 대하여 사생활, 무단침입, 과실 그리고 재산의 불법이전 행위 (conversion action)에 대해 중지명령에 의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인터넷 회사는 미국 내 주요도시 도로 주변의 전경들을 무료로 제공해 운전 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회사의 대리인들로 하여금 파노라마 디지털 카메라를 승용차에 부착시켜 도시를 운행하면서 도로주변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생성해낸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사유지에 대한 피고의 진입은 일회적이고 잠깐 동안 뿐이었고 문제된 사진을 피고가 보유함으로써 침해가 초래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실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한 바 없기 때문이다.

[5] 명예훼손 - 사전 심리 절차 - 일반 (§ 11.1201)
명예훼손 - 손해배상 - 징벌적 (§ 11.6003)

원고들은 인터넷 회사에 대하여 사생활, 무단침입, 중지명령에 의한 구제, 과실 그리고 재산의 불법이전 (conversion)에 근거하여 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할 청구권이 없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인터넷 회사는 미국 내 주요도시 도로 주변의 전경들을 무료로 제공해 운전 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회사의 대리인들로 하여금 파노라마 디지털 카메라를 승용차에 부착시켜 도시를 운행하면서 도로주변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생성해낸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부당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주장하는 데 실패했고,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의 사유지로 운전하게 하였다거나 혹은 피고가 자신의 운전사가 원고의 사유지로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실패했다. 또한 피고가 악의적으로 혹은 부주의하게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무시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실도 없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심리전에 기각될 수 있고, 변론준비절차 기준에 따르면 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의 경과와 처분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역 관할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의 항소.

사생활침해, 무단침입, 중지명령에 의한 구제, 과실, 그리고 재산의 불법이전에 대한 소송.

피고의 기각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하여 그리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함.

일부 인용 일부 기각

[편집자 주 : 미 제3순회부 항소법원은 당해 의견을 “선례 없음”으로 지칭하고 있다.]

변호사

데니스 모스칼(Dennis M. Moskal) 외 1인 : 원고 측-항소인 측 소송대리인

다랄린 듀리(Daralyn J. Durie) 외 5인 : 피고 측-피항소인 측 소송대리인

판사

순회판사 렌델, 조단 그리고 현역복귀 지방판사 바도바(Rendell and Jordan, circuit judges, and Padova, senior district judge)

의견 부분

조단 판사의 의견 :

아론 보링과 크리스틴 보링(Aaron C. Boring and Christine Boring)은 연방민사소송 규칙 12(b)(6)에 따라 그들의 청구를 기각한 서부 펜실베이니아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다.

I. 배경

2008년 4월 2일 보링 부부는 펜실베이니아 주 알레게니 카운티(Allegheny County)의 제1심 일반소송 법원(the Court of Common Pleas)에서 사생활침해, 무단침입, 중지명령에 의한 구제, 과실 그리고 재산의 불법이전을 주장하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개시하였다. 보링 부부는 각 소송 사유에 2만5천 달러 이상

의 배상금, 부대비용 그리고 간접손해를 청구하였고, 이에 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였다.

보링 부부의 청구는 미국의 전 영역에 걸친 주요한 도시 내부와 주위의 도로에 대한 파노라마 전경을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지도¹⁾상의 한 부분인 “도로 전경”(스트리트 뷰; Street View)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도로 전경 프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하여 구글의 대리인들은 파노라마 디지털 카메라를 승용차에 부착한 후 도로를 따라 주변지역을 촬영하며 도시 주변을 운전했다. 구글에 따르면, 도로 전경(스트리트 뷰)의 범위는 “공공 도로이다.”(피고항고인 답변서, Br. at 10). 구글은 개인이 도로 전경상에서 적절하지 않은 영상을 발견하는 경우, 당해 영상을 보고하고 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피츠버그의 개인 소유 도로에 거주하는 보링 부부는 “구글이 수개월 전 자신들의 주거지 내에 들어와 아무런 사생활의 포기 동이나 허가를 얻지 않고 수영장을 포함한 자신들의 주거지를 컬러 이미지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App. at A 31.) 그들은 자신들의 도로에 명확히 “사적 소유임.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표기된 표지판이 있다고 주장하고(Appellant’s Op. Br. at 11), 구글이 자신들의 도로 위를 주행하면서 도로 전경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들을 공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무시하였다고 주장한다(Id).

2008년 5월 21일 구글은 주(州)가 서로 다름을 이유로 하는 연방법원관할권(diversity jurisdiction)을 원용하여, 당해 소송은 펜실베이니아 서부지구를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으로 이관되었고, 구글은 기각신청을 제출하였다. 이에 보링 부부는 청구를 변경하여,

1) 구글 지도는 사용자들에게 주소와 사업체 등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쌍방향 도로 지도에 표기된 모든) 상세한 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에 의한 서비스이다.(피고항고인 답변서, at 45)

이전의 재산불법이전 (conversion claim) 청구²⁾를 부당이득 청구로 바꾸었다. 2008년 8월 14일 구글은 다시 보링 부부의 청구가 입증에 실패했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것을 신청했다.

2009년 2월 17일 지방법원은 보링 부부의 모든 청구를 기각할 것을 신청한 구글의 입장을 지지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보링 부부가 구글의 행위가 통상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개인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 청구를 기각하였다. (Boring v. Google Inc., 598 F. Supp. 2d 695, 699-700 (W. D. Pa. 2009).) 법원은 구글이 보링 부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과실에 기한 청구 역시 기각하였다. (Id. at 701.) 무단침입청구를 기각하면서 법원은, 보링 부부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의 불법침입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Id. at 702.) 법원은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관계를 맺은 바 없으며, 보링 부부는 구글에 대하여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부여한 바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원인 역시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Id. at 703.) 법원은 또한 보링 부부가 펜실베이니아의 강제적 중지명령을 위한 필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중지명령에 의한 구제를 기각했고, 구글이 부당한 행동 (outrageous conduct)에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사실관계를 보링 부부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하였다. (Id. at 701 n. 3, 704.) 요약하면, 법원은 보링 부부가 “모든 쟁점에서 청구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청구변경의 시도 역시 소용없었

다”고 결론 내렸다. (Id. at 698, 704 n. 8.)

보링 부부는 자신들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청구뿐만이 아니라 무단침입과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Boring v. Google Inc., Civ. A. No. 08-694, 2009 WL 931181 (W.D. Pa. Apr. 6, 2009).) 법원은 보링 부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판정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2009 WL 931181, at *2.) 법원은 또한 보링 부부가 당해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도 거절하였다. (Id.) 결국 법원은 보링 부부의 무단 침입에 대한 청구를 다루면서 판결문의 용어내용상 손해가 반증이 없으면 승소가 될 사건의 일부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Id., at *1.)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은 보링 부부가 그들이 침입의 결과로부터 손해를 입고 있다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청구에서 명목상 손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무단 침입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Id. at *1)

보링 부부는 지방법원의 기각결정과 연이은 재심 신청 기각결정 모두에 대해 항소하였다.

II. 논의³⁾

A. 심사 기준

우리는 규칙 12(b)(6)에 따라 기각된 청구에 대해 처음부터 새로이 심사를 행한다. (Phillips v. County

2) 참고의 편의를 위하여 변경된 청구는 여기에서 단지 “청구 (complaint)”라고만 언급하도록 한다.

3) 구글은 기한 내에 29 U.S.C. §1441과 1446에 따라 지방법원으로 소송을 이전시켰다. 지방 법원은 28 U.S.C. §1332에 따라 주(州)가 서로 다를 이유를 하는 연방법원관할권 (diversity jurisdiction)을 행사하였다. 우리는 28 U.S.C. §1291에 따라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관할권을 보유한다.

of Allegheny, 515 F. 3d 224, 230(3d Cir. 2008)을 볼 것.)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소장에 청구인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청구를 간략하고 평이하게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FED. R. CIV. P. 8(a)(2).)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 원고는 피고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해악을 원고에게 끼쳤다고 하는 “그럴듯한 추론(plausible inference)”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 {Ashcroft v. Iqbal, 129 S. Ct. 1937, 1952 (2009); 또한 (원고는 자신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Bell Atlantic Corp. v. Twombly, 550 U.S. 544, 556 (2007)도 참고할 것; 그리고 Phillips, 515 F. 3d at 234 (원고는 소송의 기각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상할 수 있는 면에서부터 타당한 측면에까지 자신의 소송을 환기시켜야 한다는 점이 언급됨)(인용 생략)}. 책임에 대한 추상적인 주장은 충분하지 않다. {Iqbal, 129 S. Ct. at 1950을 볼 것(연방 답변 규칙은 이전에 있었던 고도로 기술적이고 법전 의존적인 체제로부터의 현저하고 상당한 정도의 출발을 강조하지만 당해 사항으로 말미암아 결론 정도만 준비하고 있는 원고를 위한 공판 전 증거 개시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소송사유의 내용 중 공식적인 상술(formulaic recitation)은 무시하여야 한다 … .” (Twombly, 550 U.S. at 555.)

규칙 12(b)(6)에 따른 신청에 직면한 법원은 관련 소송에 있어 모든 사실적 주장의 진실성을 수용하여야 하고 비신청인을 위한 합리적인 추론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Gross v. German Found. Indus. Initiative, 549 F. 3d 605, 610(3d Cir. 2008).) 법적 결론에는 그와 같은 존중이 없어야 하며, 법원은 사실적 주장으로 이루어진 법적 결론을 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Papasan v. Allain, 478 U.S. 265, 286 (1886) (cited with approval in Twombly, 550 U.S. at 555(인용 생략)}. 원고가 청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법

적 결론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적 내용부분은 독립적으로 법원이 위법행위의 단순한 가능성 이상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Iqbal, 129 S. Ct. at 1950.) 간단히 말해 잘 신청된 청구가 우리로 하여금 위법행위의 단순한 가능성 이상을 추론하도록 할 수 없을 때, 신청인은 청구를 인용 받지 못한다. {Fowler v. UPMC Shadyside, 578 F. 3d 203, 211 (3d Cir. 2009) (Iqbal, 129 S. Ct. at 1949을 인용)}.

항소에서 보링 부부는 지방법원이 자신들의 중지 명령 청구뿐만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 무단 침입, 부당이득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주장한다. 이하에서 각 청구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B. 사생활 침해

펜실베이니아 주법은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4가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다: “[1]타인의 사생활 평온에 대한 부당한 침해; [2]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에 대한 전용; [3]타인의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 그리고 [4]타인을 대중에게 거짓되게 알리는 부당한 공표.” {See Burger v. Blair Med. Assocs., Inc., 964 A. 2d 374, 376-77(Pa. 2009)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652B-E(1977) 인용)}. 지방법원은 보링 부부의 소송을 사생활 평온에 대한 침해와 사생활의 부당공개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소송으로 다루었고 법원은 두 청구 모두가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 주요이유는 도로 전망(스트리트 뷰) 이미지가 합리적인 개인을 놓고 볼 때 상당히 거슬리는 수준의 침해라는 결론을 뒷받침할만한 사실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었다. 이에 보링 부부는 지방법원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 자신의 독립적이고 평온한 사유지에 들어와서 [그리고] 360도 전망위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되었을 때라도(보링 부부는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당히 거슬린다(highly offensive)고 느끼지 않을 것 ...”이라고 하며 규칙 12(b)(6)에 따른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Appellants’ OP Br. at 19)

i.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침해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침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자신들의 사적인 영역인 주거의 평온에 가해진 의도적인 침해 행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또 그 주거의 평온에 대한 침해는 합리적인 개인을 놓고 볼 때 실질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거슬리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공개된 정보가 통상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 부끄러움, 나아가 굴욕감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Pro Golf Mhg., Inc. v. Tribune Review Newspaper Co., 809 A 2d 243, 247 [31 Med. L.Rpt. 1092] (Pa. 2002) (인용생략)}. 공표(publication)는 청구의 요점이 아니므로 우리는 침해자체가 야기한 해악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Borse v. Piece Goods Shop, Inc., 963 F. 2d 611, 621 (3d Cir. 1992)를 볼 것}.

[1]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문으로 막아 놓지 않은 차도에 자동차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사진촬영을 한다고 하여 부끄러움이나 굴욕감을 느끼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⁴⁾

는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상당히 거슬리는 것이 아닌 행위의 실례로서 사주거지의 문에 노크하는 것을 언급한다.(Restatement (Second) of Torts, §652B cmt. d.를 볼 것.) 보링 부부의 주장은 문을 노크하는 것보다 거의 틀림없이 덜 침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생활은 보링 부부의 집, 차고와 수영장의 외부적 광경이었다 — 당해 광경은 방문자나 배달부를 포함하여 보링 부부의 차도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송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구글이 잠시 차도를 지나가면서 사유지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찍은 사진의 이미지이다. 하지만 당해 이미지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거슬린다고 합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침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⁵⁾

중요하게도, 보링 부부는 주거에 대한 침해를 분석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사실로서 자신들이 그들의 집 안에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촬영되었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예컨대 Pacitti v. Durr, Civ. A. No. 05-317, 2008 WL 793875, at *26 (W.D. Pa. Mar. 24, 2008을 볼 것) (거기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피고가 제3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원고의 분양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상당히 거슬린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그 이유로는 원고가 당시 분양아파트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aff’d, 310 F. App’x 526 (3d Cir. 2009); (“정비 기사가 인근 마당에 들어 와서 그곳을 살펴 본 것만으로는 상당히 거슬리는 침입의 충분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던) GTE Mobilnet of S.

4) 미국은 영국의 커먼로를 계수했으나 각주가 독립의 법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영역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법률협회의 주 업무로서 미국법의 각 분야를 간단한 조문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재표현하려 한 것이 바로 이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이상도, 법률영어사전(청림출판사, 2002), p. 504)(역자주).

5) 우리의 결정에 긴요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도로 전경을 찍은 사진이 카운티 과세당국(the County Assessor)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공개적으로 볼 수 있었던 보링 부부 집의 광경과 유사하다는 구글의 주장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 보링 부부가 심하게 다투지도 않았다.

Texas Ltd. P'ship v. Pascouet, 61 S.W. 3d 599, 618 (Tex. App. 2001). 참조}

보링 부부는 변론 절차에서 지방법원이 통상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에게 무엇이 상당히 거슬리는 행위 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당해 주장에 대한 어떠한 권위 있는 전거도 인용하지 않고 있다. 사실 법원은 적절한 경우 변론 절차에서 “상당히 거슬리는”지의 문제를 법률 문제로서 결정한다. {예컨대 (어떤 여자의 연고지에서 빚쟁이(debtor)라고 불리는 빚수금대행업자(debt collector)가 그녀 가족의 모든 소유물과 그녀의 자동차까지도 회수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생활침해 주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Diaz v. D. L. Recovery Corp., 486 F. Supp. 2d 474, 475-480(E.D. Pa. 2007)을 볼 것}. 보링 부부는 또한 법원이 자신들이 실제로 구글의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방법원의 이 부분 평가는 구글의 행위가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대하여 상당히 거슬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뒤 나온 것이었다. 그러므로 법원은 당해 행위가 상당히 거슬리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적절히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⁶⁾

요약컨대, 보링 부부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법 문제로서 판단할 때 실패했다. 왜냐하면, 주장된 행위는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자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정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ii. 사생활에 가해진 공개

사생활 공개에 기초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 원고는 공표된 사실이 “(3) 이성적인 개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슬리는 (2) 사적인 사실에 가해진 (1) 공개라는 것과 (4) 공중의 합법적 관심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Harris by Harris v. Eastern Pub. Co., 483 A. 2d 1377, 1384[11 Med. L. Rptr. 1209] (Pa. Super. Ct. 1984)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652D) 인용.}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침해 청구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는 보링 부부가 사생활의 공개에 기초한 청구에 대한 세 번째 요건, 다시 말해 공개가 이성적인 개인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것이라는 사항을 입증하는 데에 충분한 사실을 주장하지 못했다는 지방법원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다른 세 가지의 요건에 관해서는 다룰 필요가 없다.⁷⁾

결론적으로 보링 부부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생활 공개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청구는 법적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주장된 행위는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자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6) 구글은 사생활 침해를 주장할 만큼 보링 부부의 차도가 실제적인 사적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한다. 이는 상당한 수의 법원들이 집의 외부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광경으로 인하여 주거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보링 부부 집의 이미지는 이미 인터넷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우리는 주장된 행위가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자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보링 부부의 차도가 사생활 침해 청구의 목적을 위한 “사적 도로”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7) 하지만 우리는 밝혀진 사실이 두 번째 요건에서 요구하는 대로의 “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보링 부부의 부동산은 이미 과세기록, 지도의 형식으로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공공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공적인 기록물이었던 사실은 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Strickland v. Univ. of Scranton, 700 A. 2d 979, 987 (Pa. Super. Ct. 1997)를 볼 것.)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C. 무단 침입

지방법원은 무단침입은 소송에서 요구되는 피해 배상의 근인(近因, proximate cause)이 아니며, 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은 일반적으로 무단침입 청구에 활용할 수 있지만 보링 부부는 자신의 소송에서 명목적 손해배상을 적시하여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링 부부의 무단침입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의 명백히 회의적인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규칙 12(b) (6)에 따를 때 이를 기각한 판결은 잘못된 것이었다.

무단 침입은 “예외적으로 간단하고 엄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이다.(Prosser on Torts at 63 (West, 4th ed. 1971).) 펜실베니아 법에 따르면, 이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의적이고(unprivileged) 의도적인 침입”으로 정의된다.(Graham Oil Co. v. BP Oil Co., 885 F. Supp. 716, 725 (W.D. Pa. 1994) (Kopka v. Bell Tel. Co. 91 A.2d 232, 235(Pa. 1952))). 그와 같이 침입하지 않았다는 청구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유효하게 손해를 하나의 청구 요소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고의적으로 들어가는 자는 비록 토지에 들어가는 것이 토지나 소유자 혹은 그것의 안전이 법적으로 보호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는 사람 혹은 사물에 게 어떠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무단 침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Restatement (Second) Torts §163; see also Corr. Med. Care, Inc. V. Gray, Civ.

A. No. 07-2840, 2008 WL 248977, *11(E.D. Pa. Jan. 30, 2008)(정해진 일시에 맞춰 피고가 원고의 집에 들어왔다는 주장은 “펜실베니아 무단침입법에 따라 기각 청구를 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판시)).

[2] 여기서 보링 부부는 구글이 자신들의 재산에 허가 없이 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증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단침입이다. 펜실베니아 법에 따르면 명목적이거나 간접적 손해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Cf. 1 Stein on Personal Injury Damages §1.3(3d ed. 2009) (“손해는 소송 사유의 전제 조건이 아니며, 명목적인 손해는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고 향후에도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75 AM. JUR. 2D Trespass §112 (2009) (“손해가 증명되지 않거나 실제적이지 않다면, 원고는 무단침입에 대한 소송에서 명목상의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인용 생략)). 그러므로 지방법원이 청구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무단침입 청구를 바로 기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무단침입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손해를 입증할 수 있었다면 보링 부부는 1달러라도 건질 수 있었겠지만 이는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그들이 무단침입이 주인(主因, legal cause)이라는 것, 다시 말해 실제적인 해악이나 손해를 야기하는 데에 있어 실질적인 요소였다는 것을 입증할 부담을 진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⁸⁾ (C & K Coal Co. V. United Mine Workers of Am., 537 F. Supp. 480, 511(W.D. Pa. 1982), rev'd in part on other grounds, 704 F. 2d 690, 699 (3d Cir. 1983), if

8) 지방법원은 무단침입 사건에서의 원고는 명목상의 손해를 주장하여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899년 이래 단 하나의 사건만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당해 법원이 인용한 사건은 무단침입과 관련한 사건이 아니다.(Morris & Essex Mut. Coal Co. v. Del., L. & W.R. Co., 42 A. 883, 884 (Pa. 1899) 참조.) 사실 그 사건은 명백히 당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같은 판결 참조. (“전체 절차는 원고의 재산상의 권리에 대한 위법적인 침해에

they want more than a dollar.}

우리의 이러한 입장이 당해 청구가 불법행위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혹은 약식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적절한 증거에 대한 제한에 관해서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D. 부당 이득

부당이득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원고는 원고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여된 이익, 피고에 의한 이익의 가치 상승 그리고 피고가 가치의 상환 없이 그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당해 이익을 받았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충분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Lackner v. Glosser, 892 A 2d 21, 34 (Pa. Super. Ct. 2006) (인용 생략).) 전형적으로 부당이득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체결되었거나 무효의 계약 아래서 수여한 이익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법은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은 이익의 가치를 보상하도록 요구한다. (Steamfitters Local Union No. 420 Welfare Fund v. Phillip Morris, Inc., 171 F. 3d 912, 936(3d Cir. 1999) 참고(인용 생략). ; Hershey Foods Corp. v. Ralph Chapek, Inc., 828 F. 2d 989, 998-99(3d Cir. 1987)).

지방법원은 계약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들과 구글 간의 관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과 보링 부부

가 구글사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링 부부의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하였다.(App. at A12-A13.) 나아가 법원은 보링 부부가 적절하게 다른 종류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지 않았고 펜실베이니아 주는 부당이득을 독립한 불법행위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링 부부의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우리는 보링 부부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이 구글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원고는 무효 혹은 미체결된 계약을 주장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링 부부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익은 물론이고 보링 부부에 의하여 구글에 부여했다는 어떠한 이익도 주장하지 않는다. 피고는 구글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보링 부부의 재산을 촬영함으로써 인하여 여러 가지의 불법행위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에서는 보링 부부가 구글사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보링 부부의 희생하에 구글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이 주장되지 않고 있다. 부당이득 청구는 계약이나 준계약과 관련한 사건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당해 경우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자신들에게 행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원고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⁹⁾ (Romy v. Burke, No. 1236, 2003 WL 21205975, at *5(Pa. Com. Pl. Philadelphia May 2, 2003)).

기반한 것이 아닌 재산의 취득을 정당화하는 일련의 행위에 기반 하여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었다.”)) 유사하게 자신의 준비서면에서 구글에 의하여 인용된 어떠한 사건도 무단 침입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 사실 구글 자신은 우리가 명목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소송을 무단침입 청구로 환송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지적한다. 일정한 소송에서는 명목상의 손해를 구하지 않을 경우 명목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심사가 면제될 수 있지만 무단침입 청구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 9) 우리는 보링 부부가 무단침입에 대한 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당해 청구가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여부에 관한 규칙12(b)(6)의 심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 청구가 펜실베이니아 주법에 따라 단일의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다루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보링 부부가 단일의 불법행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당이득 청구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링 부부에 의하여 구글 사에 부여된 이익을 뒷받침하는 데에 충분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송된 당해 사건에서 보링 부부는 자신들의 부당이득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

E. 중지명령에 의한 구제

펜실베이니아 주법은 중지명령에 의한 구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청구를 위한 자신의 권리가 명확하고, 중지명령이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 나아가 요청된 구제를 기각하는 경우에 구제를 인용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uznik v. Westmreland County Bd. of Comm'rs, 902 A. 2d 476, 489(Pa. 2006) (Harding v. Stickman, 823 A. 2d 1110, 1111(Pa. Commw. Ct. 2003) 인용)}. 중지명령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이다.(Ambrogio . Reber, 932 A. 2d 969, 974(Pa. Super. Ct. 2007) 참조.)

[4] 지방법원은 원고가 중지명령에 의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보링 부부가 중지명령에 의한 구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항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원고는 보링 부부의 재산에 구글사가 한번 그리고 간단히 출입을 하였다는 정도의 주장만을 하고 있다. 중요하게도, 보링 부부는 구글사가 문제가 된 사진을 보유함으로써 야기되는 피해를 드러내 주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거슬리는 정도의 이미지들은 도로 경관(스트리트 뷰)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래 전에 삭제되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F. 징벌적 손해배상

펜실베이니아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청구를 위하여 피고가 “부당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주의하


거나 혹은 사악한” 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Feld v. Merriam, 485 A. 2d 742, 747-48(Pa. 1984).)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상적인 과실에 기반할 수는 없다.”(Hutchinson ex rel. Hutchinson v. Luddy, 946 A. 2d 744, 747(Pa. Super. Ct. 2008).)

[5] 보링 부부는 청구에서 부당하다거나 사악한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구글이 의도적으로 운전자를 그들의 사유지에 보냈다거나 운전자가 사유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 없다. 더욱이, 구글이 악의적으로 혹은 부주의하게 행위를 했다가거나 의도적으로 보링 부부의 권리를 무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도 없다.

보링 부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청구는 항상 증거개시(discovery) 이후에 배심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에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청구를 기각한다(“단순한 과실 혹은 과도한 과실에 대한 증명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약식 재판의 부인(결정)에 대하여 파기한) Phillips v. Cricket Lighters, 883 A. 2d 439, 445, 447 (Pa. 2005)판결 참조; (징벌적 손해배상의 사안에 대한 배심원에의 제출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Feld, 485 A. 2d at 748도 참조.¹⁰⁾ 그리고 변론절차기준에 구속되어 판단해 볼 때, 원고의 청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를 위한 아무런 근거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청구를 구성하기 위해 법적 결론을 활용할 수 있지만 청구의 사실적 내용은 독립적으로 법원이 위법행위의 단순한 가능성 이상의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수준의

10) 항소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항상 증거개시(discovery) 이후에 배심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두 개의 판례에 의존한다: Kirkbride v. Libson Contractors, Inc., 555 A. 2d 800 (Pa. 1989), 그리고 Jacque v. Steenberg Homes, Inc., 563 N.W. 2d 154 (Wis. 1997). 앞의 Kirkbride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Iqbal, 129 S. Ct. at 1950 참조 ; 그리고 (원고는 자신의 청구가 그럴듯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Twombly, 550 U.S. at 556도 참조}.

구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구글의 신청을 받아들인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그러나 무단침입 청구(trespass claim)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실시하면서 이를 과기환송한다. 

III. 결론

앞서 제시한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는 보링 부부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 부당이득, 중지명령에 의한

■ 출처: Media Law Reprint Vol. 38, No.25, 1306-1313.

■ 번역: 김 용 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사)

구가 규칙 12(b)6에 따른 기각여부심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가 주장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기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이 보상적 손해배상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루었다. 뒤의 Jacque 사건도 우리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목적 손해배상이 주어졌고 “부당한 목적에 의해 저질러졌으나 중대한 해악은 없는” 무단침입이 인정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무단침입 청구와 함께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563 N.W. 2d at 161.) 따라서 그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사안이 항상 배심원에게 배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판시하지는 않았다.